

# 정보 보안 규정 신규대조표

변 경 전	변 경 후	비고
<p><b>제8조 (보안성 평가)</b> ① 보안성 <b>평가</b>는 정보 시스템이 운영 단계 이전에 보안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정보시스템이 방대하거나 기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외부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(전문 기관, 감리 등)을 얻어 보안성 <b>평가</b>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보안성 <b>평가</b>와 관련된 사항은 문서화 하여 관리하도록 한다.</p>	<p><b>제8조 (보안성 검토)</b> ① 보안성 <b>검토</b>는 정보 시스템이 운영 단계 이전에 보안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정보시스템이 방대하거나 기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외부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(전문 기관, 감리 등)을 얻어 보안성 <b>검토</b>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보안성 <b>검토</b>와 관련된 사항은 문서화 하여 관리하도록 한다.</p>	<p>조명 변경 문구수정</p> <p>문구수정 문구수정</p>
<p><b>제13조 (원격근무 보안관리)</b> ① 재택·파견·이동근무 등 원격 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도입·운영할 경우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제8조(보안성 <b>평가</b>)에 따라 보안성 <b>평가</b>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⑥ (생략)</p>	<p><b>제13조 (원격근무 보안관리)</b> ① 재택·파견·이동근무 등 원격 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도입·운영할 경우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제8조(보안성 <b>검토</b>)에 따라 보안성 <b>검토</b>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⑥ (현행과 동일)</p>	<p>문구수정</p>
<p><b>제14조의 2(보호구역설비)</b> ① 보호구역에 <del>이상여부(전기, 온도, 습도)를 감지하기 위한 자동 감지장치를 설치한다.</del></p> <p>② <del>자동화재 경보 설비를 설치하고 소화 시스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자동 소화 설비를 설치한다.</del></p> <p>③ <del>온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항온 항습기를 설치한다.</del></p> <p>④ <del>정전에 대비하여 무정전 전원공급장치(UPS)를 설치한다.</del></p>	<p><b>제14조의 2(보호구역설비 및 운영)</b> ① 보호구역은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한 보호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온도·습도 조절기(항온항습기·에어컨 등)</li> <li>2. 화재감지기 및 소화설비</li> <li>3. 누수감지기</li> <li>4. 비상발전기, 무정전전원장치(UPS)</li> <li>5. 감시카메라(CCTV)</li> <li>6. 비상등·비상로 안내 표시</li> </ol>	<p>조명 변경 문구수정</p> <p>항 삭제</p> <p>항 삭제</p> <p>항 삭제</p> <p>호 추가</p> <p>호 추가</p> <p>호 추가</p> <p>호 추가</p> <p>호 추가</p>
	부 칙	
	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8조, 제13조, 제14조의 2)은 2023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	